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체인력 채용 공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4에 따라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체인력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임용예정직급	지원코드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한시임기제 6호	교육A	1명	임용일 ~ 2027.06.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B	1명	임용일 ~ 2027.08.17.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복수 코드 중복 지원 불가)
-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4항에서 의거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교육기획	한시임기제 6호	○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 문화자원 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 예술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 - 지역 연계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문화박물관 연계 문화교육(체험·특화) 기획 및 운영 - 문화교육과 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이행사항 점검 ○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 및 대내외 평가 업무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등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9.15.) 기준]

※ 학위요건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10.6.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한시임기제 6호 (연구조사)	응시 자격 요건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학위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문화예술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 자료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근무 경력 ☞ 직무분야학위 : 문화·예술분야(음악학, 미학, 예술학, 인류학 등) 및 교육분야(역사교육학, 미술교육학 등) 관련 학과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경력 및 학위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9. 15. 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6. 10. 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경력 상응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 10. 6. 예정)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경력'요건 응시자 참고사항]

※ 경력기준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구분	채용자격요건(경력기준)	자격요건	우대요건
한시 임기제 6호	경력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만 인정 (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	<u>자격요건 충족 이후</u> 민간·공무원 경력 인정
	경력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만 인정	<u>자격요건 충족 이후</u> 민간·공무원 경력 인정

※ '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9.2.) 기준]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하되,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중복 제출시 유리한 1건만 인정, 자격증 등급에 따른 구간별 차등 배점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직무기술서) 참조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15~20분)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전문지식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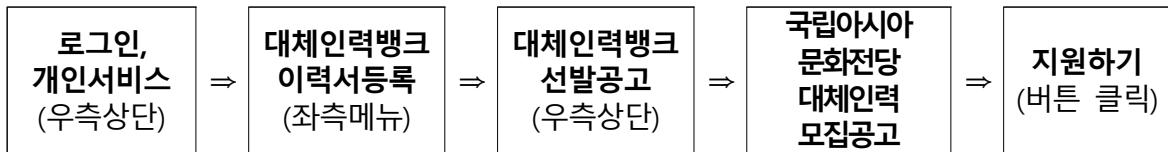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8.24.(월) ~ '26.9.2.(수)	'26.8.31.(월) ~ '26.9.2.(수)	'26.9.11.(금)	'26.9.15.(화)	'26.9.22.(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 acc.go.kr](http://www.acc.go.kr)) 및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31.(월) ~ 9. 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할 예정

[이력서 작성요령]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표기, 제출서류 미비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력서제목** :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지원코드' 및 '자격요건' 반드시 택일하여 기재함.

- 예시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시임기제 6호(교육A 또는 교육B)(경력1, 경력2 ~ 학위6 중 택1)**

* 지원코드 및 자격요건 택일 필수, 공개여부는 무관

2.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학력사항 : 최종학력을 정확히 기재함

4. 경력사항(해당자에 한함) : 일반경력 및 공무원경력을 정확히 기재함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경력확인이 가능하고 기관 직인, 부서장 결재 등을 통해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

※ 필요시 별지6 양식 활용하되,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없는 경우는 불인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5. 자격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내용을 정확히 기재함 * 자격증 사본 첨부

6. 기타보유기술: 해당없음

7. 어학능력: 해당없음

8. 자기소개·학업 및 경력사항·업무수행계획 : 온라인 양식에 기재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9. 특기사항: 해당없음

10. 기타첨부파일 : 위에서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논문 사본, 학위논문요약서(별지4)
 - (필수)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성에 한함), 응시원서(별지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2),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3)

* 첨부파일명 : 임용예정직급-지원코드-응시자이름-파일명 순 (예시: 한시6호-교육A-홍길동-졸업증명서)

**** [정부수입인지 관련 안내]**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첨부하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접수처에서는 구매 불가)
-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 첨부)
- 반드시 새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희망근무조건: 작성 불필요

나.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첨부) 시

- 증빙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압축하여 임용예정직급-지원코드-응시자이름 으로 파일명 기재
- * 예시: 한시6호-교육A-홍길동
-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임용예정직급-지원코드-응시자이름-파일명 순으로 기재
- * 예시: 한시6호-교육A-홍길동-졸업증명서

② 등기 우편제출 시

- 접수처: (614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공무원 채용담당
- 제출 마감: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봉투 겉면에 ‘응시직급(지원코드) 응시자 ○○○’ 기입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반드시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정부수입인지(7,000원)	
	자기소개, 학업 및 경력사항, 업무수행계획서, 특기사항 등 온라인(나라일터) 양식 일체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3호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전문학사 이상 혹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학예사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하여, 이메일(tpdms1403@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9. 22.(화)~'26. 10. 21.(수)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0. 6.(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부서	임용예정직급(분야)	지원코드	채용기간	비 고
문화교육과	한시임기제 6호 (교육기획)	교육A	임용일 ~ 2027.06.30.	
		교육B	임용일 ~ 2027.08.17.	

-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6호 봉급월액(주 35시간 기준): 2,300,03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산재보험: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기관에서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10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062-601-4030)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6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교육기획		한시임기제 6호	2명	문화교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업무	○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 문화자원 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 예술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 - 지역 연계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 아시아문화박물관 연계 문화교육(체험·특화) 기획 및 운영 - 문화교육과 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이행사항 점검			
필요 역량	○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 및 대내외 평가 업무			
	○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필요 지식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고객지향 마인드, 문화예술·인문학 소양			
	○ (직급별 역량)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응시 자격 요건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 능력, 학습자 이해 능력			
	○ 아시아문화자원 기반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교구재 개발·활용 지식			
우대요건	○ 문화예술단체 및 강사 소통협력기반 교안 개발, 학습자 만족도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실무 지식			
	○ 문화예술 행정절차에 관한 지식			
경 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학 위	③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④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직무분야경력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⑥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학위	☞ 직무분야경력 : 문화예술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자료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근무 경력			
	☞ 직무분야학위 : 문화·예술분야(음악학, 미학, 예술학, 인류학 등) 및 교육분야(역사교육학, 미술교육학 등) 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이력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필수	1. 자기소개서 등 온라인(나라일터) 양식 일체	○ 온라인(나라일터)에 등록
	2. 정부수입인지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3. 응시원서	○ * 별지서식 제1호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자필 서명 필수 * 별지서식 제2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 서명 필수 * 별지서식 제3호
	6.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해당 자에 한함	7. 경력(재직) 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경력확인이 가능하고 기관 직인, 부서장 결재 등을 통해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 ○ 필요시 별지6 양식 활용하되,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서명이 없는 경우는 불인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적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8.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추후 임용예정일(2026.10.6.)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논문 사본(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9. 학예사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중복 제출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별지 서식 제1호>

응시원서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시임기제 6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한시임기제 6호(교육A / 교육B 택 1)	
응시자격 (경력 또는 학력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		경력	☐ 경력1 ☐ 경력2 ☐ 경력3 ☐ 경력4
		학력	☐ 학력1 ☐ 학력2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칸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지원코드		한시임기제 6호(교육A / 교육B 택 1)	
응시자격 (경력 또는 학력 중 반드시 하나만 선택)		경력	☐ 경력1 ☐ 경력2 ☐ 경력3 ☐ 경력4
		학력	☐ 학력1 ☐ 학력2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한시임기제 6호(교육A), 한시임기제 6호(교육B)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한시임기제 6호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 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 원서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 온라인 구매 시 정부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 * 별도 첨부파일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계제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00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인)